

Ⅱ. 선임대상

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

○ 법적근거 :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

구 분	전기설비 종류	선임대상 전기설비
전기사업용 전기설비	전기사업용 전기설비	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(선임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)
자가용 전기설비	1. 전기수용설비	저압 75kW이상
	2.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	저압600V이하는 전기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
	3. 발전설비	저압 20kW초과
	4.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	
	5.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 전기설비 -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사업장 - 광산보안법(現, 광산안전법)에 따른 갑종탄광 -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·충전 및 판매사업장 -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-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	저압 20kW이상
	6.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-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-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·단란주점 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-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-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-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-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(現,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)	저압 20kW이상